

1. 개정이유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불명확한 인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, 과도한 인증 처리일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정 인증 처리기간 합리화(안 제2조)

규칙 제6조제5항 등에 따른 법정 인증 기간의 처리일수 산정 시 공휴일만 제외되고 있어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과 같이 토요일도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자 함

나. 시행세칙 제·개정 절차 명료화(안 제10조)

운영기관은 장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제·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제·개정 시 관련 규정에 대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명료화하고자 함

다. 인증 기준 명확화(안 별표1 및 별표 1의2)

인증 기준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개념을 정비하고,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연계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목록을 일치시키는 등 인증 기준을 명확화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일부 개정문 및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국토교통부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

(국토교통부)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「**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**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”을 “「**민원처리에 관한 법률**」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”로 한다.
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운영세칙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별표1 및 별표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인증신청 보완 등) ① 삭제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규칙 제6조제5항·제6항(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기준 제2조제2항,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「<u>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</u>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.</p> <p>제10조(운영세칙)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<u><단서 신설></u></p>	<p>제2조(인증신청 보완 등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민원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-----.</p> <p>제10조(운영세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다만, 운영세칙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[별표 1]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</p> <p>※ 단위면적당</p> $\begin{aligned} \text{에너지 소요량} &= \frac{\text{난방에너지소요량}}{\text{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}} \\ &+ \frac{\text{냉방에너지소요량}}{\text{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}} \\ &+ \frac{\text{급탕에너지소요량}}{\text{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}} \\ &+ \frac{\text{조명에너지소요량}}{\text{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}} \\ &+ \frac{\text{환기에너지소요량}}{\text{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}} \end{aligned}$ <p>※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(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)의 경우 냉방 평가 항목을 제외</p> <p>※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=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× 1차에너지 환산계수</p> <p>※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효율등급 평가에 포함</p>	<p>[별표 1]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</p> <p>2.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(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)의 경우 냉방 평가 항목을 제외</p> <p>3.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=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× 1차에너지 환산계수*</p> <p>※ 제10조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에너지원별 환산계수</p> <p>4.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에 반영하여 평가</p>

[별표 1의2]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

1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: 인증등급 1++ 이상

$$2. \text{에너지자립률(\%)} = \frac{\text{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}}{\text{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}} \times 100$$

※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적을 완화 시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
주1)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(kWh/m²·년)

$$= \text{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}^* + \text{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}^* \times \text{보정계수}^{**}$$

*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= $\sum[(\text{신재생에너지 생산량} - \text{신·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}) \times \text{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}] / \text{평가면적}$

** 보정계수

대지 내 에너지자립률	~10% 미만	10% 이상~15% 미만	15% 이상~20% 미만	20% 이상~
대지 외 생산량 가중치	0.7	0.8	0.9	1.0

※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은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만을 고려한다.

주2)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(kWh/m²·년)

$$= \sum(\text{에너지소비량} \times \text{해당 1차에너지 환산계수}) / \text{평가면적}$$

※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(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)의 경우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

3.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

-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 의[별지 제1호 서식] 2.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. 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(BEMS)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

[별표 1의2]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

1. [별표 2]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++ 이상

2. [별표 2의2]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20% 이상

나.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(kWh/m²·년)

$$= \text{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} + (\text{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} \times \text{보정계수})$$

1)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

$$= \sum[(\text{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} - \text{신·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}) \times \text{1차에너지 환산계수}] \div \text{평가면적}$$

2)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

$$= \sum[(\text{신·재생에너지 생산량} - \text{신·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량}) \times \text{1차에너지 환산계수}] \div \text{평가면적}$$

3) 보정계수

※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산정 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은 대지 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만을 고려한다.

다.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(kWh/m²·년)

$$= \sum[(\text{별표1에 따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} + \text{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})]$$

3.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확인

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」 의[별지 제1호 서식] 2.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.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

